

「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」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24(목) 유인환 의원 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유인환 의원)

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촌의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

으로 평창군에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

- 귀농인은 신고 당시 만 60세 미만으로 규정 하였으며
-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인구유입과 농촌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

- 귀농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1부**